

2026년 9월 몽골 관광시장 동향

- 몽골인 방한 단체 여행비자 운영 -

'26.09.22(화) / 올란바타르지사

□ 몽골인 단체관광비자 도입 및 운영 검토

- * 단체관광(C-3-2) 양국 정부 간 협력 추진 경과
 - 한국과 몽골 양국 정부는 “연내 몽골인 단체비자 도입” 가속화 및 관광 유치 활성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추진 중 보도 (2026.5.26., 법무부)
 - (2026년 9월부터 시행) 몽골 단체비자 전담여행사 지정 모집 공고
(2026.8.10.,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)
 - (2026년 9월부터 시행) 몽골 국민 대상 단체비자 전담여행사 선정 결과 공고
(2026.8.31.,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)

□ 몽골 단체관광비자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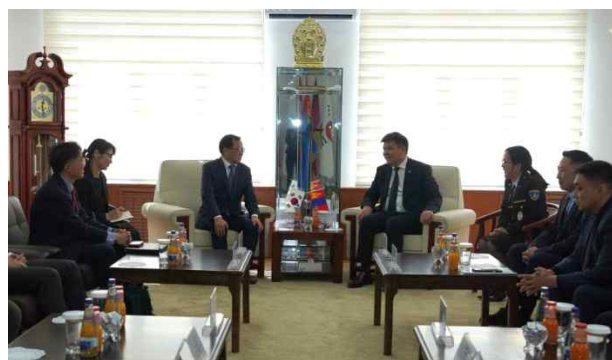
1. (시행시기) 2026.9.1.~
2. (대상)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, 대학교이하 수학여행단 등 5인 이상 단체관광객
3. (발급절차)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가 단체사증 발급 신청을 대행하고 공관은 단체사증 심사 및 허가여부 결정
4. (사증발급 내용) 유효기간 3개월, 체류기간 15일 이내의 단수 사증
 - ※ 동일한 날짜 및 항공편으로 입·출국
5. (사증 수수료) 한-몽 사증발급간소화 협정에 따라 면제
 - ※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(KVAC) 수수료는 납부

□ 양국 간 단체관광 협력 추진 현황 [출처 : MKBC KOREA 26.8.31]

- 한국과 몽골의 이민당국이 양국 국민의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

- 박상옥 한국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해 엔흐수흐(B.Enkhsukh) 몽골 이민청장과 만나 양국 이민당국 간 협력 확대와 국민들의 상호 방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함
- 몽골 측은 한국을 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와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, 전자비자 적용 범위 확대, 비자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함
- 한국 측은 몽골 국민의 비자 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수비자 발급 요건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
- 양국은 기존 협력 양해각서(MOU)를 현재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, 'Immigration Dialogue'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여, 인천국제공항과 몽골 외국인·이민청의 항공 국경부 담당부서 간 직접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함
- 특히 한국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시범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힘

한국-몽골 양국 이민당국 간 협력 확대 방안 논의 /2026.08.27./



출처: [MKBC KOREA](https://www.mkbc.co.kr)

□ 단기방문 사증 방문목적별 분류

- 단기방문(C-3) 사증은 C-3-1부터 C-3-10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, 몽골 국적자는 C-3-9(일반관광) 사증을 가장 많이 신청함. 2026년 9월

부터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C-3-2(단체관광) 사증 운영

- C-3-9(일반관광) 사증은 입국 횟수에 따라 단수(Single), 복수(Double 또는 Multiple) 사증으로 구분되며, 발급 유형은 신청인의 방문 목적, 출입국 이력 및 재외공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

세부 약호	구분	대상
C-3-1	단기일반	단기방문(C-3) 활동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, 아래 순수 관광(C-3-2)~ 동포방문(C-3-9)을 제외
C-3-2	단체관광 등 (지정여행사 발표26.8.31)	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(여행사)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, 단체관광 등 관광,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
C-3-3	의료관광	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
C-3-4	단기상용	시장조사, 업무연락, 상담, 계약,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 카드 소지자
C-3-5	협정상 단기상용	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※CEFA, FTA 등에 한함(인도·칠레)
C-3-6	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	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·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
C-3-7	도착관광	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
C-3-8	동포방문	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
C-3-9	일반관광	C-3-2(단체관광 등)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
C-3-10	순수환승	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

출처: www.hikorea.go.kr

□ 몽골 단체비자 전담여행사 선정 현황 (26.8.31발표)

연번	여행사명	비고
1	'Airman' LLC	
2	'Allta Tour' LLC	
3	'Central Asia Travel' LLC	
4	'Let's Travel' LLC	
5	'Location Line Consulting' LLC	
6	'Mandora' LLC	
7	'Mongol Namshin' LLC	

출처: www.overseas.mofa.go.kr